

사랑충심 반생충심 의회다운 의회

## 월간 입법동향

- 2026년 10월호 -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 |                         |   |
|-------------------------|---|
| 1. [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4 |
| 2.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6 |

## □ 타 시·도 입법동향

- |                                        |    |
|----------------------------------------|----|
| 1. [제정]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 | 8  |
| 2. [제정]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 10 |

## □ 국회 입법연구

- |                                                                    |    |
|--------------------------------------------------------------------|----|
| 1. [NARS 현안분석] 축제의 즐거움이 쓰레기로 남지 않도록<br>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 12 |
| 2. [NARS info]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 27 |

## □ 국외 입법동향

- |                                 |    |
|---------------------------------|----|
| 1. [인도] 영세·중소기업발전법 재정           | 31 |
| 2. [베트남]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 제도 확대     | 32 |
| 3. [독일]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처리 디지털화 입법례 | 34 |

## □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 행사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처리에 관한 입법사례 •

- |                                            |    |
|--------------------------------------------|----|
| 1. [미국 덴버] 재활용품 및 유기성 폐기물 수거에 관한 특별행사 요건   | 42 |
| 2. [미국 라구나힐즈] 특별행사 폐기물 전환 프로그램             | 45 |
| 3. [일본 교토] 교토(京都)시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47 |

## □ 주요 판례

- |                                                                                                                                                                                      |    |
|--------------------------------------------------------------------------------------------------------------------------------------------------------------------------------------|----|
| ◇ [대법원]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감’으로 하고, 그 포장을 ‘광천감’으로 하여<br>등록받은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br>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br>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 48 |
|--------------------------------------------------------------------------------------------------------------------------------------------------------------------------------------|----|

## □ 유권해석 동향

- |                                           |    |
|-------------------------------------------|----|
|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4건 (광역시·도 1건 / 기초 시·군·구 3건) | 50 |
|-------------------------------------------|----|

#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 1 [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2027. 3. 16.]

[법률번호 제21921호 2026. 9. 15. 제정]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 ○ 제정이유

호혜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도기본계획을,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까지).

마. 사회연대금융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시설비 등 지원 및 국유·공유재산 특례, 교육·훈련 및 성장 지원,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조 례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법률안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힘쓰고 사회 가치 실현에 노력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 중이나, 기반이 되는 법률안이 전부 제각기 파편화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주체들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임.
- 경기도 역시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사회적경제육성과가 담당하고,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동체지원 과정에서 담당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지원 부서가 나뉘어있어 비슷한 성격을 지닌 사회연대경제주체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임.
-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첫 번째는 제13조(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도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두 번째는 제15조(시·도지원센터의 설치 등)제4항에 따른 시·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임. 그 외에도 제9조(시·도기본계획 및 시·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제2항에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률안에는 사회연대경제주체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조금씩 다른 상황에 따른 주체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일부 소외되는 주체가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이에 기존에 시행 중인 3개의 조례 시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되, 통일안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2026. 9. 10.]

[의안번호 제2221279호, 2026. 9. 17. 제439회 제9차 본회의 가결]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국외기록물의 복원·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9조).
- 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술적·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 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안 제38조).
- 마.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신설).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조 례 :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

- 이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외에도 민간·국외기록물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

도록 역할을 명시적으로 확대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의 준기록관 설치 의무 및 전자기록물의 이관절차를 정비해 공공 및 민간·국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임.

○ 또한 개정법은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운영 범위와 효력을 확실히 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의원 정원과 임기를 확대했으며,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로 해석됨.

○ 이에 개정법에서 신설된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현행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 입법을 통하여 입법 취지를 뒷받침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타 시·도 입법동향

### 1 [제정]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26. 3. 30] [서울특별시조례 제10053호 2026. 3. 30. 제정]

####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정이유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유독가스, 트라우마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퇴직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시장이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면서 지원 근거와 제외 조건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시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 출동과 야간근무교대 등 업무 특성상 신체 및 정신적 부담이 높음. 이를 고려해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서는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하는 각종 압 등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소방공무 원을 위한 건강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제도는 재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잠복기를 거쳐 발현되는 질 환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임. 이에 퇴직 후 10년간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단을 지원하 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96호, 진선 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서울 외에도 전북, 광주, 부산, 세종 등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는 등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 원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현행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 8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서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제2조(정의) 및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보건 복지 지원은 재직 소방공무원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입법 사례는 2024년 화성 아리셀 화재 및 2026년 평택 위험물창고 화재 등 단순 화재가 아닌 유독물질이 포함된 특수한 화재가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에서 검토할 만한 사례로 판단되며, 건강 문제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재직 소방공무원 들의 사기를 양양하고,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막연한 건강상 불안감을 해소하 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퇴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특수검진으로 발생할 예상 비용은 서울시 검토보고서 상 매년 검진 시 10년간 58억 원, 격년 검진 시 32억 원 수준임. 소방공무원 정원은 '26년 기준 서울시가 7,436명 경기도가 11,783명으로 경기도의 정원이 58% 정도 많아 산술적으로 계산 시 매년 검진에 91억 원, 격년 검진에 50억 원가량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도입 시 도 재정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제정]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26. 7. 13] [조례 제7748호 2026. 7. 13. 제정]

### ◇ 소관위원회 : 의화운영위원회

### ◇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공모전 관련 행사를 시행한 바가 없으나, 향후 주민참여 확대와 입법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등 의회가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공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지방의회가 공모전을 운영하고 시상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 거법」상 기부행위 오인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행계획 수립→공고→심사→ 공개검증” 등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공고,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 조까지)
- 다.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성, 위원 및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6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수상작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적 의정활동 구현과 혁신적이고 생활친화적인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가 공모전을 운영하고 시상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오인 가능성을 선 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거버넌스의 구축과 참여민주주의의 발달로 국내외 중앙부처 및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사업화 및 정책화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4개 광역단체(인천, 강원, 전남광주, 제주)와 2개 기초단체(시흥, 평택)로 경기도의회 역시 추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할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아이디어 수상작의 결정 및 시상 △기타 공고 및 공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추후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문제를 예방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음.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상작의 결정 및 시상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라 조례에 따른 시상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부상 수여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상 수여와 관련하여 예외를 일부 인정한 만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아이디어를 도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뿐더러 도민들의 도의회에 대한 인식과 내적친밀감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국회 입법연구

### ◇축제의 즐거움이 쓰레기로 남지 않도록◇

#### - 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430호 (2026. 9. 8.)

-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1회용품, 굿즈·응원용품 포장재, 홍보물, 무대·연출 자재 등 폐기물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함. 일부 지역축제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으로 인한 감량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행사 유형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실적을 조사·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 현행 제도는 업종·시설 중심의 1회용품 규제와 지자체의 사후 처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행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고, 문화·관광 지원제도도 폐기물 감량·자원순환 성과와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음
- 자원순환형 문화예술 축제·행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에 행사 단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상 지원·평가체계에 자원순환 성과를 반영하고, 다회용기·재사용 자재 인프라, 표준계약서, 성과보고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I. 서론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향유 확대, 관광자원 개발, 대중문화 산업 성장에 기여해왔다. 지자체가 주최·지원하는 지역축제는 지역 브랜드 형성과 방문객 소비 유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K-POP 콘서트와 대형 음악 페스티벌은 국내외 관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sup>1)</sup> 코로나19 이후 대면 문화행사가 재개되고 공연·축제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규모 관객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문화예술 행사의 폐기물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sup>2)</sup>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은 짧은 기간 특정 장소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식음료 판매 과정의 1회용 컵·접시·수저·포장재, 응원용품과 굿즈 포장재, 홍보물, 현수막·배너, 무대 설치·철거 과정의 자재 등이 혼합 배출된다. 또한 배출 주체가 주최자, 행사 대행사, 입점업체, 관객, 공연관계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행사 종료 후 청소·수거만으로는 감량, 재사용, 재활용, 적정처리라는 자원순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1)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세계인 사로잡는 '케이-컬처' 종합 체험장, '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 선정」, 2026.1.23.; 한국콘텐츠진흥원(2026),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pp37-38.

2)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 보도자료,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어요」, 2024.12.18.

최근 일부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이 1회용품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일부 지역·일부 축제 사례에 머물러 있고, 행사 유형과 운영 방식별 폐기물 발생량·처리실적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역축제, 대형 음악 페스티벌, K-POP 공연, 공공기관 주최 행사, 민간 주최 행사 등은 운영 방식과 폐기물 발생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행사 유형별 조사·평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sup>3)</sup>

현행 법제와 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는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공연장 등 업종·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야외광장·공원·임시부스 등에서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전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화·관광 분야 지원제도에서도 폐기물 감량이나 자원순환 성과를 지원·평가체계와 연계하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sup>4)</sup>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역축제의 1회용품 감축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조례와 지침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 대한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자가점검, 이행결과 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시도는 자원순환형 행사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현재의 관리체계는 주로 공공주관 행사나 공공지원 행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문화예술 행사 전반에 대해서는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이행결과 확인, 비용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뒷받침할 명시적 법률 근거와 제도적 유인이 제한적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행사는 인허가·신고·안전관리 등 기존 행정절차를 통해 지자체와 접점이 형성될 수 있으나, 해당 절차는 본래 안전·질서·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폐기물 감량계획이나 자원순환 성과관리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행사 주최자나 행사대행사에 폐기물 감량 관련 의무를 부과할 경우 비용·인력·공간·위생관리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 수집·운반·처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사무에 속하므로, 제도 설계는 지자체의 처리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

사 단계에서 발생을 줄이고 분리배출·회수·자료제출에 협력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다회용기 대여·세척 인프라, 공공지원 평가 가점, 친환경 행사 인증,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인센티브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문화예술 축제·행사의 폐기물 발생 특성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과 제도의 한계를 법·제도·운영의 측면에서 검토한 후, 폐기물 감량, 주최자 책임, 공공지원 연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형 축제·행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 발생 특성과 관리 현황

### 가.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의 발생 특성

문화예술 축제·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달리 짧은기간, 특정 장소, 다수의 참여자라는 요인이 결합하여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행사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현행 통계체계에서 ‘행사’라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집계되지 않는다. 대체로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또는 행사장 청수·수거 과정에서 혼합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행사별 발생량, 품목별 배출 구조, 재사용·재활용 실적, 처리비용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sup>6)</sup>

행사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식음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장재와 음식물 폐기물이다. 둘째, 관객의 공연·축제 참여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원용품, 슬로건, 배너, 굿즈 포장재, 홍보물 등이다. 셋째, 행사 조성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대 장치, 임시 구조물, 전시 부스, 포토존, 현수막, 장식물, 합판, 플라스틱 폼, 스티로폼류 등이다.

이들 폐기물은 발생 시점과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다. 식음료 폐기물은 입점업체와 관객이 주로 배출하고, 굿즈·홍보물 폐기물은 주최자·기획사·관객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다. 무대·연출자재 폐기물은 행사대행사와 무대 제작업체의 설치·철거 과정에서 발생한다. 음식물은 묻은 용기류, 복합재질 포장재, 접착제나 코팅재가 포함된 홍보물이 혼합 배출되면 선별과 재활용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행사 폐기물은 특정 품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부터 현장 운영과 사후 정리까지 연결되는 관리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문화예술 축제·공연·지역축제 등 관련」, 2026.8.5.;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행사별 폐기물 발생량, 관객 수, 처리비용, 다회용기 사용 실적, 1회용품 감축 실적 등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해 2025년도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개소 조사 보고서를 사례로 제시하고, 지역축제 개최시기, 축제 유형, 음식물 제공 형태 등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1회용품 사용량 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별표 2]: 「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상 지원제도 및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 참조

5)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서울시 행사폐기물 감량 실천지침(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행사폐기물 감량 계획서」 및 「행사폐기물 처리 및 자체 평가 결과서」 표준양식 참조

6)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현행 폐기물 분류체계상 ‘행사 폐기물’은 별도 분류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발생 형태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산 집계됨.

그림 1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 발생 단계별 흐름도



자료: 기후부 보도자료(2024.12.18.),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지역축제 만들어요」, 서울특별시 「행사폐기물 감량 실천지침」 등을 토대로 필자 재구성.

## 나. 행사 유형별 주요 폐기물 발생 양상

지역축제는 먹거리 부스, 체험 부스, 특산물 판매, 공연, 전시 등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 중 폐기물 발생이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식음료 판매와 방문객 소비 과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이동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1회용 컵, 플라스틱 용기, 종이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포장재 등이 사용되며,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1회용품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이 함께 발생한다.

일부 지역축제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이 폐기물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개소에서 다회용기 미사용 축제와 사용 축제를 비교한 결과, 축제 폐기물 발생량은 약 24%, 폐기물에 포함되어 버려진 1회용품은 37% 이상 감소하였고, 1회용품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39% 감축된 것으로 제시되었다.<sup>7)</sup> 다만 이는 특정 지역의 사례이므로 전국 평균 감축률로 일반화하기보다는 행사 유형별 조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sup>8)</sup>

대형 대중음악 공연과 K-POP 행사는 지역축제와 다른 폐기물 발생 양상을 보인다. 지역축제에서는 식음료 부스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과 음식물 폐기물이 중요한 반면, 대중음악 공연에서는 관객 참여형 소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두드러진다. 공연장 안팎에서는 응원봉, 슬로건, 포토카드, 앨범, 의류, 기타 MD 상품이 판매·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종이·비닐·플라스틱 포장재가 발생한다. 국내 음반기획사가 앨범·포장재·굿즈 제작 등에 사용한 플라스틱은 2019년 573.3톤에서 2023년 2,264.8톤으로 약 4배 증가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발생량은 약 6,639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대형 공연·야외 페스티벌은 무대 설치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폐기물 관리가 중요하다. 무대 세트, 임시 구조물, 배경 장치, 전시 부스, 포토존, 현수막, 배너, 조형물, 장식재 등은 단기간 사용 후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합판, 플라스틱 폼, 스티로폼, 금속프레임, 복합소재가 결합된 자재는 재활용경로가 제한적이다.

이처럼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은 행사 유형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다르다. 지역축제는 식음료 판매와 방문객 소비 과정의 1회용품 관리가 중요하고, 대중음악 공연과 K-POP 행사는 굿즈·음원용품·포장재 관리가 중요하다. 대형 공연과 야외 페스티벌은 무대·연출 자재의 재사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다. 자원순환형 행사 운영 사례와 확산 동향

기후부는 지역축제의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중심으로 자원순환형 행사 운영을 확산하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자체 의견조치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부터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를 연계하여 「일회용품 없는 지역축제」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 초 전국 지자체 지역축제 계획 1,17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340개 축제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지자체 차원의 관리도 일부 도입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 주최 행사를 대상으로 감량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확인 체계를 마련하였고, 행사장 사용·제공 억제 품목과 대체 권장 품목, 감량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표준양식을 운영하고 있다.<sup>11)</sup>

강진군 운영 사례에서는 다회용기 사용과 재활용 가능한 무대·부스 자재 선택이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행사 유형에 따라 관리 쟁점은 달라진다. 식음료 판매가 많은 행사는 다회용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오염 폐기물과 일반쓰레기

9) 박홍배 의원실, 「국내 음반기획사 과대포장 관련 환경부 제출자료」, 2024.10.

10)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앞의 각주 5);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앞의 각주 2);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앞의 각주 3).

11)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서울시 행사폐기물 감량 실천지침(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행사장 사용·제공 억제 및 대체 사용 권장 품목 리스트」, 「행사폐기물 감량 계획서」 및 「행사폐기물 처리 및 자체 평가 결과서」 표준양식; 서울관광재단 TV조선, 「2025 서울관광 푸드페스티벌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서 및 이행결과서」 2025.5.3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26 지구의 날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및 이행결과서」 2026.4.18.; 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경제인연합회, 「2026 서울시향 강변음악회 감량계획 및 이행결과서」 2026.6.13.

7) 전라남도·강진군·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강진군 ‘1회용품 없는 축제’ 폐기물 실태조사 보고서」. 25.12.

8) 앞의 각주 7)의 보고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앞의 각주 3).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공연·페스티벌은 출연자·스태프 등 관계자 단계의 1회용품 사용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시는 2024년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푸드존 29개 매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였다. 3일간 약 15만 명이 참여한 이 축제에서 다회용기 275,370개가 사용되었으며 회수율은 98%, 1회용품 폐기물 감축량은 약 2.8톤으로 집계되었다.<sup>12)</sup> 이는 민간 참여와 식음료 판매가 결합된 대형 음악축제에서도 다회용기 운영체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지역 축제에서는 다회용기뿐 아니라 음식 특성에 맞춘 대체용기 활용도 시도되고 있다. 2024년 김천 김밥축제에서는 김밥을 담는 용기 일부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먹을 수 있는 빵튀기 그릇으로 대체하고, 국물류 등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이는 모든 행사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축제 음식의 특성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현장형 대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sup>13)</sup>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ESG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행사 운영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MICE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운영가이드」를, 서울특별시시는 「서울시 MICE ESG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sup>14)</sup> 다만 이들 운영가이드는 주로 회의, 전시, 컨벤션 등 MICE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굿즈 소비, 응원문화, 야외 식음료 판매, 무대 연출 등 문화 예술 축제·공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나 보완지침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례는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가 다회용기 사용 확대, 지자체 조례, 일부 현장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이 현행 법령과 제도 안에서 직면하는 한계를 법·제도·운영 측면에서 살펴본다.

### III. 현행 법령 및 제도·운영의 한계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은 행사 전체를 하나의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개별 업종·시설, 지자체의 사후 처리, 개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가. 법령상 한계

##### 1.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 규제의 적용 한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은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공연

시설 등 일정한 업종·시설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다.<sup>15)</sup> 이러한 구조는 상시적으로 영업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야외광장·공원·도로·임시부스·임시공연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전체를 관리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지역축제 현장 안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개별 식품접객업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사 전체를 기획·운영하고 입점업체의 운영방식과 현장 동선을 조정하는 주최자나 행사대행사는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 관리책임을 지는 주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중음악 공연과 K-POP 행사에서 발생하는 앨범 포장재, 굿즈 포장재, 응원용품, 홍보물, 슬로건, 배너 등은 기존 1회용품 규제체계만으로 포괄하기 어렵다.<sup>16)</sup>

##### 2. 「폐기물관리법」상 행사 단위 감량계획·보고 근거 부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하고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sup>17)</sup> 그러나 현행 체계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책임과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규모 행사 폐기물을 행사 단위로 감량·보고·관리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행사 종료 후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행사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는 행사장 청소 과정의 혼합폐기물로 처리되고, 행사별 발생량, 성상별 배출량, 재사용·재활용 실적, 처리비용 등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렵다.<sup>18)</sup>

특히 대형 음악 페스티벌, 순회공연, K-POP 콘서트 등은 여러 지자체를 이동하며 개최되거나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최 지역별 조례나 지침에 따라 관리 수준과 보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현행 「폐기물관리법」체계에서는 행사 폐기물의 감량 성과를 행사 단위로 비교하거나 관리하기 어렵다.

12)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024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친환경 다회용기 운영 결과」 2024.8.

13) 경북신문, 「김천 김밥축제 빵튀기 접시제공...시민들 공무원들 아이디어 칭찬」. 2024.10.; 경상일보, 「2024 김천 김밥축제 성료, 아이디어와 캐릭터 코달이, 행사장 포토존 디자인도 눈길」. 2024.10.

14) 한국관광공사, 「MICE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운영가이드」. 2022.6.; 서울특별시, 「서울시 MICE ESG운영 가이드라인」. 2024.12.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2]

1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실, 앞의 각주 10).

17)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18)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앞의 각주 7);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나. 제도적 한계

### 1. 문화·관광 지원제도와 자원순환 성과의 미연계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공공재정과 행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축제는 문화관광 축제 지정·지원, 지방보조금, 공공시설 대관, 지자체 후원 명칭 사용 등과 연계할 수 있고, 공연·문화행사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폐기물 감량이나 자원순환 성과를 평가기준 또는 지원조건으로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는 아니다.

「관광진흥법」은 문화관광축제 지정·지원 근거와 지속가능한 관광 촉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축제·행사 지원 평가에서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여부, 1회용품 사용 저감, 다회용기 사용·회수율, 무대·홍보물 재사용 실적 등이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sup>19)</sup> 그 결과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행사에서도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실적이 지원조건이나 평가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 2. 표준조례안·지자체 조례 중심 접근의 지역별 편차

기후부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은 지역축제의 1회용품 감축을 지자체 정책으로 확산하려는 시도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도 이와 별도로 조례와 지침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 대한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자가점검, 이행결과 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자원순환형 행사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현재 관리체계는 주로 공공주관 행사나 공공지원 행사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민간 문화예술 행사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 근거와 지원·유인 체계는 제한적이다.<sup>20)</sup>

그러나 표준조례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울특별시는 조례와 지침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 대한 감량계획 수립과 이행결과 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리방식이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표준조례안은 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굿즈 포장재, 응원용품, 홍보물 현수막, 무대·연출 자재 등 문화예술 행사 특유의 폐기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 3. 행사 폐기물 통계·정보관리 체계 미비

행사 폐기물 관리를 제도화하려면 행사별 발생량과 감량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행사 폐기물은 별도 통계 항목으로 관리되지 않고,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또는 혼합폐기물로 분산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사별 총 발생량, 1인당 발생량, 성상별 배출량, 다회용기 사용량과 회수율, 1회용품 사용량, 처리비용 등을 비교하기 어렵다.<sup>21)</sup>

일부 지자체에서 감량계획과 이행결과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내부 행정자료로만 관리되면 국가 통계나 정보공개 체계와 연동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체계에서는 행사 유형별 폐기물 발생 특성과 감량성과를 전국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다. 운영상 한계

### 1. 문화예술 현장의 비용·인력·공간 부담

행사 주최자와 행사대행사에 폐기물 감량 관련 의무를 부과할 경우, 현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감량계획서 작성, 다회용기 도입, 회수함 설치, 현장 안내인력 배치, 세척·운반비 부담, 입점업체 관리, 행사 종료 후 실적 제출 등이 모두 추가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규모 공연기획사나 지역 행사대행사는 친환경 운영을 위한 별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행사장 구조가 복잡하거나 관객 이동이 빠른 야외 행사에서는 다회용기 회수, 분리배출 안내, 오염된 폐기물 관리가 쉽지 않다. 식음료 판매가 많은 행사에서는 위생관리와 세척체계도 중요한 부담 요인이 된다.

### 2. 지자체 처리책임과 주최자 감량책임의 역할분담 불명확

행사 폐기물 관리의 핵심 쟁점은 지자체의 처리책임과 행사 주최자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이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지자체 사무에 속한다. 따라서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관리의무를 부과할 경우, 지자체 처리책임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행사 주최자에게 아무런 사전 관리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행사 종료 후 지자체 청소·수거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처리책임과 행사 주최자의 사전 감량·현장 협력책임 사이의 책임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 2024; 문화체육관광부, 「2025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26.3.

20)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2026.8.5.), 앞의 각주 5);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앞의 각주 6)

21)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앞의 각주 7);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앞의 각주 19)

### 3. 인센티브와 사회적 합의 부족

행사 관계자에게 폐기물 감량책임을 부과하려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공연이나 대형 페스티벌은 관객 동원, 안전관리, 시설 설치, 수익성 확보 등 여러 운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폐기물 감량 의무만 추가하면 현장의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자원순환형 행사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한적이다. 다회용기 대여·세척·비용 지원, 공공시설 대관 우대, 보조금 평가 가점, 친환경 문화행사 인증, 표준계약서 제공 등은 일부 사업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문화예술 행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지원·평가·인증 체계로 정착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허용 제도만으로는 행사 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 IV.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앞 장에서는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법령상·제도적·운영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에 대응하려면 행사 종료 후 청소·수거에 그치지 않고, 행사 단위의 관리책임, 감량계획, 지원평가, 정보관리, 인센티브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주최자의 사전 감량·현장 협력책임은 별도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

### 가. 법령상 개선: 행사 단위 관리책임과 감량계획 근거 마련

#### 1. 「자원재활용법」에 행사 주최자의 1회용품 관리책임 근거 신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을 업종·시설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야외축제·음악공연·임시부스·임시공연장 등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관리단위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에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행사 주최자의 관리책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sup>22)</sup>

개정 방식은 법률 본문에 행사 단위 관리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적용대상 행사, 대상 품목, 예외 사유, 단계적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시행령 [별표2]만 개정하여 행사 주최자를 새롭게 수범자로 추가할 경우 위임범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행사 주최자의 기본 책무와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규제 대상 품목도 식음료 1회용품에 한정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1회용 컵·접시·수저뿐 아니라 페트병 음료, 비닐봉투, 쇼퍼백, 광고 인쇄물, 응원용품, 합성수지 현수막, 재사용이 어려운 무대·부스 자재 등이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령 또는 고시에서 행사 유형별 억제 품목과 대체 가능 품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sup>23)</sup>

#### 2. 「폐기물관리법」에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이행결과보고 근거 신설

「폐기물관리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 대해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거나 행사 종료 후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행사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또는 행사장 청소 과정의 혼합폐기물로 처리되고, 행사별 발생량과 감량성과를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렵다.<sup>24)</sup>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가칭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에는 일정 규모 이상 행사의 주최자가 행사 개최 전에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종료 후 이행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둘 수 있다.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감량계획 보안을 요청하거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이는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사전 감량과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감량계획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분리배출 동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재활용품 배출, 무대·홍보물 재사용, 처리실적 확인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상 ‘행사 폐기물’이라는 별도 폐기물 종류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는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 대해 발생량과 처리실적을 행사 단위로 기록·보고하도록 하는 관리항목을 마련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sup>25)</sup>

### 나. 제도적 개선: 문화·관광 지원제도와 자원순환 성과 연계

#### 1. 문화·관광 자원사업 평가기준에 자원순환 성과 반영

문화예술 축제·행사 중 상당수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공공시설 대관 등 공공지원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공공재정이나 공공시설이 투입되는 행사부터 자원순환 성과를 평가·지원조건에 반영하고, 이후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 행사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23) 서울특별시, 앞의 각주 1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실, 앞의 각주 9)

2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조

25)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앞의 각주 6);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앞의 각주 18)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2]

구체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축제 지정 지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자체 축제 보조금 사업의 평가기준에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여부, 1회용품 사용저감, 다회용기 사용량과 회수율, 1인당 폐기물 발생량, 무대·홍보물 재사용 실적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sup>26)</sup>

입법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관광진흥법」상 지원사업 또는 축제 평가에서 지속가능성 및 자원순환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구체적 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고시, 사업지침, 문화관광축제 평가편람 등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점 중심의 규제보다 평가 가점, 우수사례 선정, 홍보 지원, 보조금 우대 등 인센티브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문화예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2. 표준조례안을 국가 지침과 지자체 조례의 연계모델로 정비

기후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역축제의 1회용품 감축을 지자체 정책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은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므로, 실제 조례화 여부와 적용대상, 지원범위, 이행확인 방식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sup>27)</sup>

따라서 표준조례안은 지자체 조례 확산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되, 국가 법령과 지침에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 조례가 이를 지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준에는 적용대상 행사, 감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서식, 다회용기 사용 회수율 관리, 성과지표, 정보관리 항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는 지원대상, 현장점검 방식, 보조금 집행기준, 다회용기 대여·세척 인프라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행사 폐기물 통계관리와 정보연계 체계 구축

행사 폐기물 관리가 제도적으로 작동하려면 행사별 폐기물 발생량과 감량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관련 고시에 행사 단위 보고항목과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기존 자원순환 정보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28)</sup>

표준항목에는 총 폐기물 발생량, 성상별 발생량, 1회용품 사용량, 다회용기 사용량과 회수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무대·홍보물 재사용 실적, 처리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초기에는 중앙정부·지자체 주최 행사와 공공지원 행사에 한해 내부 행정자료로 관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주요 지표를 공개하여 지자체 간 비교와 우수사례 확산에 활용하는 단계적 방식이 적절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사별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문화행사 인증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감량성과를 달성한 행사에 인증을 부여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정, 보조금 평가, 공공시설 대관, 홍보 지원 등에 반영하면 민간 행사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다. 운영상 개선: 부담 완화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화

### 1. 다회용기·재사용 자재 인프라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문화예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 부과와 함께 비용지원 및 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회용기 도입에는 용기 대여, 회수함 설치, 현장 안내인력, 운반, 세척·위생 관리, 분실·파손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중소 규모 공연기획사나 지역 행사대행사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 대한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조금, 대관료 감면, 장비 대여, 현장 인력 지원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무대·부스·홍보물 등 행사 자재에 대해서도 재사용 가능한 자재 활용, 공공 공연장·문화시설의 모듈형 자재 공동 활용, 재사용 자재 임대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지자체 처리책임과 주최자 감량·협력책임의 구분

행사 주최자나 행사대행사에 폐기물 관련 의무를 부과할 경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 책임구조를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최종 수집·운반·처리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되, 행사 주최자는 사전 감량계획 수립, 입점업체 안내, 다회용기 사용·회수, 분리배출 동선 마련, 이행결과 제출에 협력하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행사는 대관, 인허가, 신고, 안전관리 등 기존 행정절차를 통해 지자체와 접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각각의 행정 목적에 따라 운영되므로, 폐기물 감량계획을 그 절차 안에 직접 포함하기보다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뒤 제출 시기와 접수창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sup>29)</sup>

2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앞의 각주 19)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앞의 각주 5)

28)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앞의 각주 18)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공연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신설 조항에는 “행사 주최가 감량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제출 의무”와 함께 “지자체장의 지원 및 확인 권한”을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점업체, 행사 대행사, 공연장, 무대 제작업체 등 세부 주체의 역할은 시행규칙상 표준서식이나 지침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이처럼 역할을 구분해야 행사 주최자에게 과도한 처리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행사 단계의 폐기물 감량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감량계획 수립과 이행결과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이행확보 조치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감량계획이 미흡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하고, 행사 종료 후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민간 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의무나 제재를 부과하기보다, 공공지원 행사에 우선 적용한 뒤 운영성과와 현장 수용성을 평가하여 민간 행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등 사후 관리 수단과 연계할 수 있다.

### 3. 인센티브·자율협약·단계적 적용을 통한 수용성 확보

민간 행사에 폐기물 감량 의무를 즉시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과 책임전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지원 행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행사에는 인센티브와 자율협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회용기 대여·세척 비용 지원, 공공시설 대관 우대, 보조금 평가 가점, 친환경 문화행사 인증, 홍보 지원, 표준계약서 제공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그린 라이더(Green Rider)와 같이 공연·행사 계약 단계에서 친환경 운영 기준을 반영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부와 기후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 친환경 공연·축제 계약서 또는 그린 라이더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30)</sup> 이를 통해 공연장·아티스트·행사 대행사·입점업체·무대 제작업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추진 방식은 단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지자체 주최 행사와 공공지원 대형 축제에 감량계획 수립과 사후보고를 도입하고, 표준서식과 자율점검표를 마련한다. 이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 대한 국가 최소 기준과 주최자 관리책임은 법제화하되, 민간 대형공연·축제는 지자체와 기존 행정적 접점을 활용하여 별도 법률상 근거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사 폐기물 통계관리와 친환경 문화행사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계약서와 그린 라이더형 가이드라인을 민간 영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후부와 문화부의 역할분담도 병행되어야 한다.

표 1 문화예술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 개선과제

| 현재 유형     | 현행 쟁점                                              | 입법·정책 개선방안                                                                        | 제도화 수단                                                                                                             |
|-----------|----------------------------------------------------|-----------------------------------------------------------------------------------|--------------------------------------------------------------------------------------------------------------------|
| 법령상<br>현재 | 「자원재활용법」이 업종·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행사 주최자의 1회용품 관리 책임이 불명확함 |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주최자 관리책임 근거 신설                                        |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령 고시 보완                                                                                             |
|           | 「폐기물관리법」에 행사 단위 감량계획 이행결과 보고 근거가 없음                | 일정 규모 이상 행사에 감량계획 수립 및 사후보고 체계 도입                                                 | 「폐기물관리법」 신설 조항, 시행규칙상 표준서식 마련                                                                                      |
| 제도적<br>현재 | 문화·관광 자원제도와 자원순환 성과가 연계되지 않음                       | 공공지원 행사 평가에 폐기물 감량, 다회용기 사용, 재사용 실적 반영                                            |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기반 평가기준·사업지침 개정                                                                                 |
|           | 표준조례안·지자체 조례는 적용범위와 관리수준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 최소기준과 지자체 조례의 역할분담 정립                                                          | 표준조례안 정비, 국가 지침 마련, 지자체 조례 제 개정                                                                                    |
| 운영상<br>현재 | 행사별 발생량과 감량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비교·관리하기 어려움                 | 행사 단위 표준항목 기록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고시 개정,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연계                                                                                  |
|           | 다회용기 도입과 재사용, 자재 활용에 비용·인력·공간 부담이 발생함              | 다회용기·재사용 자재 인프라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 국고·지방비 지원, 보조금 가점, 공공시설 대관 우대                                                                                      |
|           | 지자체 처리책임과 주최자 감량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함                       | 최종 처리책임은 지자체, 사전 감량·현장 협력책임은 주최자로 구분                                              | 「폐기물관리법」 신설 조항, 표준서식 지침 반영                                                                                         |
|           | 민간 행사에 즉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수용성 문제와 법적 근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지원 행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 민간 행사는 기존 인허가·신고·안전관리 절차에서 형성되는 행정적 접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친환경 인증, 표준계약서 그린 라이더, 자율협약, 별도 법률상 근거에 따른 감량계획 제출, 기존 인허가·신고 절차와의 점수창구 조정, 감량계획 보완요청, 이행결과 미제출 하위제출 시 과태료, 공공지원 제한 |

자료: 필자 재구성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짧은 기간 다수 인원이 집중되면서 1회용품, 굿즈·응원용품 포장재, 홍보물 무대·연출 자재 등 다양한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다회용기 도입 사례와 지자체 조례 운영 경험은 행사 종료 후 청소·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전 계획과 사후 보고를 결합한 관리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원재활용법」에 행사 주최자의 1회용품 관리책임, 「폐기물관리법」에 감량계획 수립 및 이행결과 보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제재 강화나 지자체 처리책임의 민간 전가가 아니라, 주최자가 행사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 분리배출, 다회용기 회수, 자료제출에 협력하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상 지원·평가체계에 자원순환 성과를 반영하고, 공공지원 행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 뒤 민간 행사로 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다회용기 인프라, 친환경 인증, 표준계약서, 자율협약 등 인센티브를 병행한다면 문화예술 행사의 자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문화행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30) 한국관광공사, 앞의 각주 14); 서울특별시, 앞의 각주 14); Vision: 2025 & Julie's Bicycle, “Green Events Code of Practice(GECop)”, 2024; Equity(UK), “The Green Rider Handshake”, 2023

##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

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제103호 (2026. 08. 31.)

### Overview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산은 가장 적고 부채 부담은 가장 무거운 세대가 되었으며, 청년 내부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6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저축을 전제로 하는 설계로 인해 저축할 소득 자체가 없는 취약청년이 오히려 제도 밖에 놓이는 한계가 있다. 취약청년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 취약청년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왜 필요한가

### 자산이란?

실직·질병 같은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주거·창업 같은 기회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반



### 자산이 없는 청년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위기에 더 취약하고  
기회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음

###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자산 축적이 가장 절실한 취약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검증 필요

## 청년층의 순자산·소득 청년층 내부 격차

청년 가구의 자산 하위 20%와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



순자산·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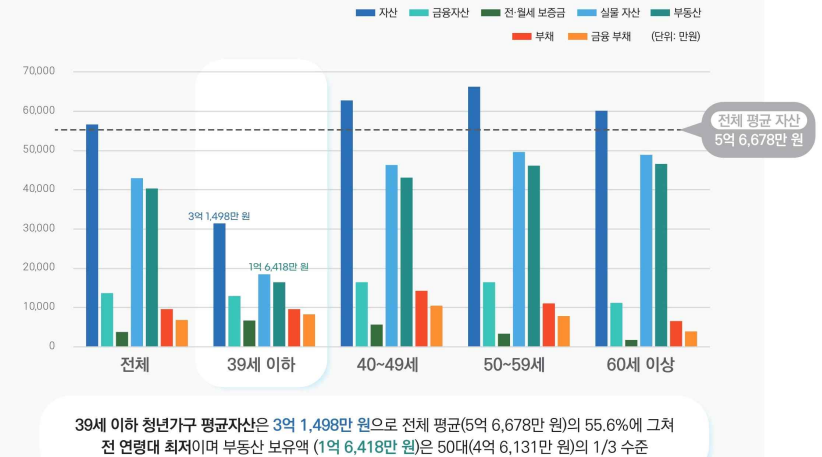


※ 자료: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 「청년 자산 양극화가 개인의 박탈감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까닭」, 「나라경제」, 2026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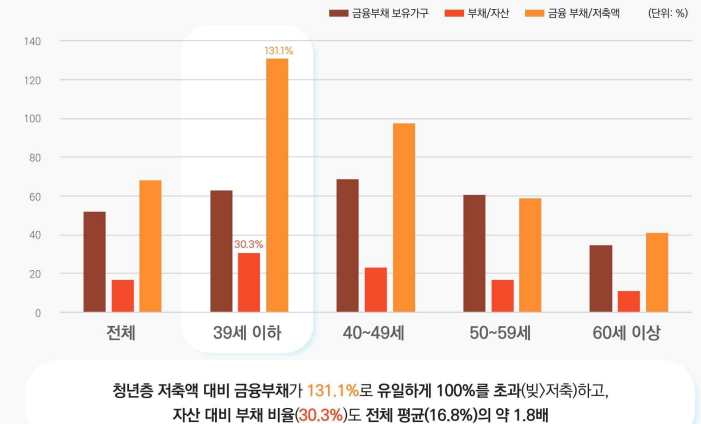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2026.6.11.p.9.

## 청년층의 자산·부채 현황 — 세대 간·세대 내 격차

### | 연령대별 자산유형별 보유액 및 부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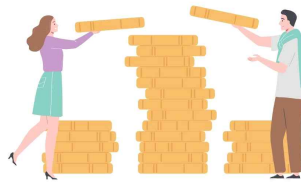
### | 부채 및 재무건전성 현황 |



## 지원사업의 전개와 청년미래적금



##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취약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



### 자산축적 가속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률로, 우대형은 연 18~19%대 적금과 맞먹는 실질 효과 제공

### 빈곤 방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급여 수급 진입을 예방하고 사회 안정을 지원

### 행동 변화

무주택 가구의 저축 증가가 관찰되고 인출 자금이 교육·주거 등 자본적 투자에 사용 (영국 아동신탁기금 평가연구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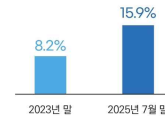
## 취약청년 관점의 한계



### 저축 여력의 벽

- ▶ 모든 사업은 본인 저축을 전제로 함
- ▶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는 무직·구직단념 청년은 원천 배제
- ➔ 가장 절실한 층이 오히려 제외

|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율 |



### 유지의 어려움

- ▶ 월 납입액 10만 원 미만 가입자의 해지율은 39.4%로 최고
- ▶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이 납입을 포기
-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상실



### 분산·단명

- ▶ 부처별(금융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분산·중복가입 규정이 복잡하고, 대표상품이 2년→5년→3년으로 교체
- ➔ 제도 신뢰 저하

## 개선방향

### 노동시장 복귀의 유인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 소득이 낮을수록 매칭률이 높아지는 누적적 매칭 구조 강화
- 위기 시 납입중지·부분인출 허용, 구직단념·고립은둔 청년의 자활·직업훈련 연계

### 통합·체계화

- 부처별 분산 사업을 이용자 관점에서 정비·개별 신설보다 기본법적 접근 또는 「청년기본법」상 기본계획에 자산형성지원 분야 명시

###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

- 지원 대상·수준의 단계적 확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재원 재배분
-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 골격이 유지되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자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국외 입법동향

### ◇ 인도, 영세·중소기업발전법 개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9. 2.)

- 2026년 8월 7일 인도 의회에서 「영세·중소기업발전(개정)법 2026」이 최종 통과되었다. 인도 중소기업부는 현행 영세·중소기업발전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기술 발전과 IT 기반 시스템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영세·중소기업 분류 시 ‘설비 투자액’과 ‘매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무료·자율적 등록이 가능한 국가 디지털 플랫폼을 중앙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이 대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결·중재 판정 등의 취소 신청이 6개월 이상 계류된 경우, 법원은 해당 금액의 최소 50%를 영세·중소기업인 공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단계별 처리 시한도 도입하였다. 영세·중소기업 분쟁해결위원회 또는 기타 조정 기관은 당사자의 최초 출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 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중재 기관은 당사자의 서면 공방이 완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한다.
- 대금 지급 지연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정부가 관할 지역 내에 영세·중소기업 분쟁해결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수행 관련 규칙 제정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였다.
- 등록 관련 허위정보 제공 및 정보공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별 경고 또는 금전제재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 이번 개정법은 2026년 8월 13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제1조 제(2)항에 따라 추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베트남,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 제도 확대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6. 9. 15.)

-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에 관한 규정 제 69/2024/NĐ-CP호의 일부개정규정 제320/2026/NĐ-CP호」를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국가 전자신원 애플리케이션(VNeID)을 중심으로 행정 절차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한층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의 전자신원계정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 전자신원 시스템에 통합된 정보를 행정기관이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 개정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자신원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활동 등록을 한 기관·단체도 전자신원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내국인 중심으로 활용되던 전자신원 체계를 외국인과 기관·단체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이에 따라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계 기업의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규정은 개인과 기관·단체에 발급되는 각종 정보와 서류를 VNeID에 폭넓게 통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통합 대상은 개인 관련 서류 66종과 기관·단체 관련 서류 140종으로, 여권, 비자, 운전면허증, 사업허가증, 수출·수입허가증 등 다양한 신분·자격 및 인허가 문서가 포함된다. 또한 VNeID에 이미 통합된 정보와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공공서비스, 민사거래 등을 처리하는 기관·단체·개인이 원본이나 사본을 다시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은 전자신원 시스템과 관계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 방식도 구체화하였다.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단체의 데이터베이스가 전자신원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와 서류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동기화·갱신된다. 통합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반면 해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전자신원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신원 주체가 VNeID를 통해 직접 정보·서류의 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승인하도록 하여, 전산망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행정정보를 VNeID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은 VNeID를 단순한 전자신분 확인 수단에서 개인과 기관·단체의 각종 행정 정보와 증명서류를 통합·활용하는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확대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인의 전자신원계정 발급 범위가 확대되고, 이미 VNeID에 통합된 정보와 서류에 대해서는 반복 제출이 제한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소요 되는 시간과 서류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사업허가, 수출입 관련 절차 및 각종 행정신 고 과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인허가 서류의 VNeID 통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주재원 역시 전자신원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관련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 또한 기존의 종이서류 중심 행정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신원계정과 전자문서를 활 용하는 업무환경에 대비하여 내부 행정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독일의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7호[통권 제305호] (2026. 9. 1.)

- ◆ 독일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공증인(Notar)이 계약의 공증과 후속절차(Vollzug)를 담당 해 왔으나, 기관별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하여 매체 단절(Medienbruch)에 따 른 업무 지연과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 이에 독일은 2026년 포괄개정입법인 「부동산계약의 후속절차, 공증 법률행위의 사법 적 승인 및 공증인의 세무신고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증인을 중심 으로 행정·사법·세무 기관이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를 교환하고, 부동산거래 후 속절차를 연속된 전자적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 이를 위하여 「건축법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등 주요 법률을 함께 개정 하고,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 법원의 승인, 세무신고 및 등기절차를 전자화하였다.
- ◆ 동법은 개별 절차의 전자화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을 하나의 전자적 절 차로 연계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세무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관련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 제 어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공증인, 전자법률거래, 매체 단절, 디지털 전환

**그림 1** 전자문서·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를 통한 전자적 정보연계

표 1 주요 개정 법률 및 개정 내용

| 구분 | 개정 법률                   | 주요 내용                                              |
|----|-------------------------|----------------------------------------------------|
| 행정 | 「건축법전」(BauGB)           |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전자적 신청·통지 및 감정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의 전자화     |
|    | 「전자사법거래령」(ERVV)         |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 방식(XML 등 구조화 데이터, 전자우편함 등) 마련 |
| 사법 |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FamFG) |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 승인 및 확정증명서의 전자적 송달                  |
|    | 「부동산등기법」(GBO)           | 전자문서 및 인증 출력물의 등기절차상 효력 인정                         |
| 세무 | 「부동산취득세법」(GrEStG)       | 공증인의 전자적 세무신고 및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전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tG)    | 공증인의 상속·증여 관련 전자적 세무신고                             |
|    | 「조세기본법」(AO)             | 주 세무당국에 접수된 부동산취득세 관련 데이터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동 제공      |
| 연계 | 「자금세탁방지법」(GwG)          | 일정한 요건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부동산 거래정보 수집·처리            |

## II.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디지털화를 위한 법률

### 1. 매체 단절의 발생과 디지털 전환

#### 가. 기존 절차의 문제점

- 독일에서 공증인과 부동산등기소(Grundbuchamt)<sup>8)</sup> 간 문서 송수신은 이미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공증인과 법원 및 대부분의 행정기관 간에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우편으로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종이문서를 다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부동산등기 절차에 사용해야 하는 매체 단절이 발생하였다.
- 전자적 등기절차가 확대되면서 종이문서를 다시 스캔하거나 동일한 정보를 여러 기관의 시스템에 반복 입력하는 과정이 지속되었고, 이는 업무 처리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나. 전자화 방식

- 동법은 공증인과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에 교환되는 신청서, 통지서, 증서 사본 및 각종 확인서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고, 관련 정보를 구조화된 전자데이터로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 특히, 기존의 전자 법원·행정 통신체계(EGVP)<sup>9)</sup>와 전자 세무신고 체계(ELSTER)<sup>10)</sup>를 활용하고,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XML은 데이터의 항목과 구조를 일정한 형식으로 표시하여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전달받은 정보를 별도로 다시 입력하지 않고 업무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sup>11)</sup>
- 이러한 방식은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다시 변환하거나 동일한 정보를 여러 기관의 시스템에 반복 입력하는 매체 단절을 줄이고,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에서 하나의 연속적인 전자적 업무 흐름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

- 동법은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환 절차를 마련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에서 발생하는 매체 단절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과 행정기관에 대한 거래 통지를 원칙적으로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sup>12)</sup>
- 전자문서는 XML 등 기계판독이 가능한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되며, 공증인의 특별전자우편함(beN)<sup>13)</sup>과 행정기관의 특별전자우편함(beBPo)<sup>14)</sup>을 통하여 송수신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공증인이 전송한 정보를 별도로 다시 입력하지 않고 업무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sup>15)</sup>
- 또한, 「건축법전」은 감정평가위원회(Gutachterausschuss)에 대한 증서 사본의 전자적 송신을 규정하여 부동산 가격정보의 수집 과정에서도 전자적 정보 활용을 확대하였다.<sup>16)</sup>
- 「건축법전」은 감정평가위원회가 매매가격자료집(Kaufpreissammlung)의 작성·분석을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제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9) Elektronisches Gerichts- und Verwaltungspostfach

10) Elektronische Steuererklärung

11) 연방정부 법률안 및 입법이유서 BT-Drs. 21/3735

12) ) 「건축법전」 제213a조

13) besonderes elektronisches Notarpostfach, 독일 연방공증인협회(Bundesnotarkammer)가 운영하는 공증인 전용 전자우편함

14) besonderes Behördenpostfach, 행정기관 간 전자적 송수신을 위한 공공 전자우편함

15) 「전자사법거래령」(Elektronischer-Rechtsverkehr-Verordnung, ERVV) 산설 제7장 제18조~제20조, BGBl. 2026 I Nr. 192, Artikel 2

16) ) 「건축법전」 제195조제1항, 제213a조. 이번 개정으로 공증인이 감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계약·청약·송납에 관한 증서 사본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8) Grundbuchamt는 부동산등기부(Grundbuch)의 기재·관리 등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며, 원칙적으로 구법원(區法院, Amtsgericht)에 설치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기능을 고려하여 “부동산등기소”로 번역하였다.

- 거래당사자는 감정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제출자료에는 부동산의 입지, 현재 및 향후 계획된 이용, 임대수익, 건축연도 및 현대화 내역, 주거·사용면적, 건축물의 설비·품질 및 에너지효율 정보 등이 포함된다.
-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추정치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가 추정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위원회는 거래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안내하고, 최소 1개월의 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sup>17)</sup>
- 또한, 감정평가위원회는 거래당사자가 해당 자료를 인터넷상의 전자양식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에 종이 설문 등을 통하여 추가로 수집하던 부동산의 가격형성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18)</sup>
-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적 송수신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정보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sup>19)</sup>

### 3. 법원의 사법적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

- 동법은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절차에서도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승인 결정(Beschluss)을 전자문서로 공증인에게 고지하고,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한다.<sup>20)</sup>
- 법원이 송달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적격 인증서 또는 이와 관련된 적격 속성 인증서를 통하여 해당 법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전자문서는 부동산등기소에 대한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증인은 이를 별도의 매체 변환 없이 후속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sup>21)</sup>
- 아울러 「부동산등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의 인증 출력물 또는 인증 사본도 등기절차에 필요한 형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법원의 승인 결과가 전자적 방식으로 등기절차까지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sup>22)</sup>

### 4. 공증인과 세무당국 간 전자적 정보교환

- 동법은 부동산거래에 수반되는 세무신고 절차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공증인은 「부동산취득세법」에 따른 양도통지(Veräußerungsanzeige)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증여 관련 신고를 원칙적으로 구조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공인된 전자 인터페이스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을 이용하며, 관련 서류도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sup>23)</sup>
- 공증인이 세무신고에 필요한 거래당사자의 세무식별번호(Identifikationsnummer)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방공증인협회를 통하여 연방중앙조세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n)에 이를 전자적으로 조회한다. 이를 통해 세무신고에 필요한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 또한, 「부동산취득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은 세무상 이익없음 증명서(Unbedenklichkeitsbescheinigung)<sup>25)</sup>를 공증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공증인은 이를 전자적으로 부동산등기소에 전송하거나 인증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전자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다만,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sup>26)</sup>
- 아울러 전자적 세무신고 체계가 구축되면 일정한 요건 아래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sup>27)</sup>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이번 개정은 부동산취득세 신고의 전자화에 맞추어 주 세무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 간 데이터 연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주 세무당국은 「부동산취득세법」 제22a조에 따라 접수한 데이터세트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하게 된다.<sup>28)</sup>

23) 「부동산취득세법」 제18조는 공증인의 양도통지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22a조는 전자 양도통지와 세무상 이익없음 증명서의 전자적 송부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tG) 제34조는 공증인의 상속·증여 관련 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4) 「부동산취득세법」 제18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증인이 세무신고에 필요한 세무식별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연방공증인협회를 통하여 연방중앙조세청에 기계적 절차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Unbedenklichkeitsbescheinigung'은 부동산취득세의 납부·비과세 등과 관련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데 세법상 문제가 없음을 세무당국이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본고에서는 “세무상 이익없음 증명서”로 번역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기 시 납세자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되,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문 단서

26) 동법은 개정 내용에 따라 공포 다음 날(2026. 6. 27.), 2026. 10. 1., 2027. 1. 1., 2028. 1. 1. 및 기술적·조직적 준비가 완료되는 날로 시행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다

27) 금융정보분석원(Zentralstelle für Finanztransaktionsuntersuchungen,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자금세탁방지법」 제28조에 따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중앙기관이다.

28) 「조세기본법」 제31b조제2b항이 신설되어 주 세무당국이 「부동산취득세법」 제22a조에 따라 접수한 데이터세트를 「자금세탁방지법」 제31조제5a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요건이 갖추어진 날 시행되며, 연방재무부가 그 시행일을 연방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취득세법」 제22a조는 전자적 데이터 송수신·제공의 세부사항, 파일형식 및 접근성 요건 등을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다. 이

17) 「건축법전」 신설 제195조제2항

18) 「건축법전」 신설 제195조제3항. 연방정부 법률안 및 입법이유서 BT-Drs. 21/3735에 따르면 종전에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격형성 관련 추가정보를 감정평가위원회가 거래당사자에게 주로 종이 설문을 통해 별도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정보수집 절차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입법이유서에서는 감정평가위원회가 수집하는 부동산 관련 자료가 연방통계청의 부동산가격지수 산정에 활용되며, 해당 지수는 분기별로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제공된다.

19) 「전자사법거래법」 신설 제19조제5항, BGBl. 2026 I Nr. 192, Artikel 2

20)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1a조, 제46조

21) 연방정부 법률안 및 입법이유서 BT-Drs. 21/3735

22) 「부동산등기법」 신설 제29조제4항, BGBl. 2026 I Nr. 192, Artikel 3

- 금융정보분석원은 해당 거래가 「부동산취득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 거래와 관련 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 세무당국에 접수된 데이터세트를 수집·처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절차에서 전자적으로 수집된 부동산거래 정보를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sup>29)</sup>

### III. 독일 입법례의 특징

- 이번 입법은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종이문서의 송수신과 동일한 정 보의 반복적인 수집·입력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 특히 이미 수집된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않고 후속절차에서 활용하는 Once-Only 원칙의 취지를 반영하고, 공증인과 행정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였다.<sup>30)</sup>
- 또한, 단순히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XML 기반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 간 정보교환을 표준화하고 자동처리가 가능하도 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증인·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의 서로 다른 업무시스 템 간에도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지 않고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1)</sup>
- 이러한 전자적 연계는 부동산계약 체결 이후 허가·통지, 법원의 승인, 세무신고 및 등 기에 이르는 후속절차의 매체 단절을 줄여 부동산등기 및 행정절차의 처리기간을 단 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 한편 연방정부 법률안의 입법이유서는 법 시행 후 늦어도 5년 이내에 입법목표의 달성 여부 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대상에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부담 감소, 전자적 부동산 등기 업무의 확대, 감정평가위원회의 데이터 수집 개선 및 연방통계청에 대한 신속한 데이터 제공 등이 포함되며, 후속절차의 평균 처리기간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있다.<sup>32)</sup>

#### [자료 출처 : 국회도서관]

에 따른 법규명령의 제정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부동산취득세 분야」에서 공증인과 세무서 간 전자적 교환에 관한 법규명령 (GrESt-eAV)의 2026년 4월 20일자 청사관초안이 마련되어 있다.BGBI. 2026 I Nr. 192, Artikel 13, Artikel 20 Abs. 5

29) 「자금세탁방지법」 신설 제31조제5a항. 동 규정은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요건이 갖추어진 날 시행되며, 연 방재무부가 그 시행일을 연방관보에 공고한다.BGBI. 2026 I Nr. 192, Artikel 15, Artikel 20 Abs. 5

30) 연방공증인협회 입법설명서, Bundesnotarkammer, Stellungnahme zum Regierungsentwurf eines Gesetzes zur Digitalisierung des Vollzugs von Immobilienverträgen, 2026.연방공증인협회는 이번 입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던 데이터 수집을 줄임으로써 Once-Only 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연방의회 공청회에서도 Once-Only 원칙을 데이터가 한 번만 수집되 고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에 매체 단절 없는 디지털 업무 흐름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DeutscherBundestag, Ausschuss für Recht und Verbraucherschutz, Protokoll der 25. öffentlichen Sitzung vom 25. Februar 2026

31) 연방의회 공청회 자료, Deutscher Bundestag, Experten begrüßen weitere Digitalisierung des Notariats (2026)

32) 연방정부 법률안 및 입법이유서 BT-Drs. 21/3735, VIII. Evaluierung. 한편, 입법이유서에 제시된 사후평가 계획은 법률 조문에 규정된 평가의무는 아니므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독일 연방정부는 중요 입법사항에 대하여 시행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이유서에 평가목표와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Bundesregierung, Fortentwicklung der Evaluierungskonzeption derBundesregierung,Beschluss vom 26. November 2019.

## 국외 지자체 자치법규 입법사례

### ◇ 행사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처리에 관한 입법사례 ◇

1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 MUNICIPAL CODE OF THE CITY AND COUNTY OF DENVER, COLORADO

#### ◇ 번역문

##### 제48장 고품 폐기물

##### 제11절 재활용품 및 유기성 폐기물 수거에 관한 특별행사 요건

##### 제48-153조 정의

이 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단어와 문구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 행사란 시의 허가를 받아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 부지에서 개최되며 다음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말한다. (i) 특별행사 담당국장이 판단하 기에 제2장 제21절에서 정의한 특별행사, (ii) 공원·레크리에이션국장의 판단에 따라 공원·레크리에이션국의 허가가 필요한 행사, (iii) 교통·인프라국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행사에 대한 취소 가능한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한 행사. (2) 시 담당 기관 및 부서란 특별행사 담당국 또는 기후행동·지속가능성·회복탄력성 담당국, 공원·레크리에이션국, 교통·인프라국 을 말한다. (3) 책임 주체란 허가 행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8-154조 재활용품 및 유기성 폐기물 요건

(a) 일반 요건. 2026년 9월 1일 이후 책임 주체는 직원, 계약업체, 고객, 자원봉사자, 참 석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및 유기성 폐기물 수거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수거 용 기. 허가 행사의 책임 주체는 직원, 계약업체, 고객, 참석자가 재활용품, 유기성 폐기물, 일반 폐기물을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적절한 위치에 수거 용기를 비치 하여야 한다. 수거 용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장소에서 발생할 것으 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 유기성 폐기물, 일반 폐기물의 양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와 크기로 비치할 것. (2) 투입하여야 할 폐기물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 도록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하거나 그림만 포함된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고 색상으로 구 분하여야 하며, 시 담당 기관 및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추가 설계 기준

을 충족할 것. (3) 시 담당 기관 및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동등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배치할 것. (c) 교육 및 훈련. 책임 주체는 현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관리하여 오염을 줄이고 적절한 수거함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및 판매업체 직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8-155조 예외**

다음 각 항의 예외를 적용한다.

(a)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미미하거나, 경제적 곤란이 입증되었거나, 현장 소비를 위한 허가받은 식품 판매업체가 없는 허가 행사는 이 절의 유기성 폐기물 관련 요건의 적용을 면제한다. (b) 일일 총 참석자 수가 350명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허가 행사는 이 절의 재활용품 및 유기성 폐기물 수거 요건의 적용을 면제한다. (c) 주간 총 참석자 수가 1,000명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허가 행사는 이 절의 유기성 폐기물 수거 요건의 적용을 면제한다. (d) 시 담당 기관 및 부서의 각 담당국장은 시장 상황 및 준수율을 고려하여 이 조에 따른 권한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 및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일일 총 참석자 수를 늘리거나 줄여 이 조의 면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 책임 주체가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종적으로 재활용품 및 유기성 폐기물을 위한 적절한 수거·운반 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해당 기관 또는 부서가 제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시 담당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 절의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 **제48-156조 교육 및 폐기물 전환 계획**

(a) 허가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발급받으려는 책임 주체는 시 담당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폐기물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전환 계획에는 최소한 해당 행사를 담당하는 수거·운반업체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연락처와 책임 주체가 직원 및 판매업체에 폐기물 전환 계획을 교육하는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이 절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공 정보로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정보 및 문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하거나 그림만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 담당 기관 및 부서가 규칙 및 규정을 통해 채택한 범용 기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48-157조 규칙 및 규정**

특별행사 담당국장 또는 기후행동·지속가능성·회복탄력성 담당국장, 공원·레크리에이션국장, 교통·인프라국장은 이 절의 규정 및 허가 행사와 관련된 기타 조례 또는 법률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 **제48-158조 제재 조치 및 처벌**

교통·인프라국장 및 공원·레크리에이션국장은 법전 제2장 제12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절에 따른 민사상 제재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 **제48-159조 보고**

기후행동·지속가능성·회복탄력성 담당국장은 늦어도 2028년 9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2034년 9월 1일까지 최소 3년마다, 2034년 9월 1일 이후에는 최소 5년마다 시의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제48-155조 제(a)항부터 제(c)항까지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허가 행사의 수에 관한 데이터, 제48-155조 제(d)항에 따른 기준 조정에 대한 설명, 준수율, 시장 상황 및 이 절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례 제628-25호 제4조, 2025년 9월 15일)

**【자료 출처 : 미국 콜로라도 주 시티 앤드 카운티 오브 멤버】**

## ◇ 번역문

## 제3장 하수 및 고형 폐기물 처리

## 제8절 특별 수거

## 제6-3-800조 특별행사 폐기물 전환 프로그램

- (A)시 내에서 개최되는 특별행사의 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 책임 주체는 특별행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 고형 폐기물의 보관·수거 처리와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수거·전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B)이 조는 참석자가 1,000명 이상인 특별행사에 적용한다.
- (C)책임 주체는 특별행사 허가 신청의 일부로서, 해당 행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전환에 관한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 주체는 특별행사 신청 시 환급 가능한 보증금 5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한다.
- (D)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 책임 주체는 행사 직원, 판매업체, 참석자가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특별행사장의 적절한 위치에 수거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E)세 종류의 수거 용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특별행사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와 크기로 비치할 것
  - (2)수거 대상 물질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표지를 부착할 것. 다만 수거 용기는 시에서 정한 추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3)이용자가 도시 고형 폐기물을 배출하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환 처리할 때 각 수거 용기에 동등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행사장 곳곳에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점으로 세 종류의 수거 용기를 함께 배치할 것
- (F)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가 특별행사의 판매 부스에 도시 고형 폐기물 수거 용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행사 담당자 또는 주최자, 책임 주체로부터 각 수거 용기의 수거 대상 물질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표지가 부착된 세 종류의 수거 용기 한 세트를 제공받아야 한다.
- (G)특별행사장에서 공공 도시 고형 폐기물 수거 용기 또는 공공 재활용품·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 책임 주체는 특

별행사 중 해당 용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공공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를 치우거나 덮어 두어야 한다.

- (H)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 책임 주체는 특별행사의 보관 용기에서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적절한 주기로 모든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조치하여야 한다. 2일 이상 진행되는 특별행사의 경우, 악취, 해충·매개동물, 비산 쓰레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매일 행사가 끝날 때 모든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행사장 밖으로 운반하거나 임시 보관 용기(뚜껑이 있는 바퀴 달린 카트, 뚜껑이 있는 수거함, 덮개가 있는 롤오프 컨테이너)로 옮겨야 한다.
- (I) 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 책임 주체는 모든 도시 고형 폐기물을 적절한 허가를 받은 매립지 또는 기타 적절한 허가를 받은 처리시설로 수거·운반하고, 모든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환 처리를 위하여 허가받은 해당 물질 처리시설로 수거·운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J) (1) 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 책임 주체는 특별행사장에서 해당 시설로 반입된 물질의 반입일과 중량이 기재된 계량 전표를 처리시설 및 모든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2) 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 책임 주체는 특별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a)특별행사의 명칭 및 개최일
  - (b)책임 주체 또는 주최자, 행사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
  - (c)행사가 개최된 장소의 주소
  - (d)행사일별 참석자 수
  - (e)수거 및 처리된 도시 고형 폐기물의 양
  - (f)수거 및 처리된 재활용품의 양
  - (g)수거 및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
  - (h)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반입된 모든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 발급한 계량 전표 사본
- (K)주최자 또는 행사 담당자, 책임 주체가 납부한 전환 보증금은 시가 전환 프로그램이 이 조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확인한 후 반환한다. 시의 집행 담당 공무원 또는 그 지정자가 고형 폐기물 전환 프로그램이 이 조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는 전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한다.
- (조례 제2023-224호 제4조, 2023년 9월 5일 가결)

【자료 출처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니구엘 시】

## ◇ 번역문

교토(京都)시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3조

① 식전, 회의, 전시회, 강연회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는 자(이하 “주최자”라 한다)는 행사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행사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참가하려는 자(이하 “참가자”라 한다)에게 에코백을 지참하도록 하는 등 비닐봉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지할 것.

(2) 행사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식기가 일회용 식기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 참가자는 행사에 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행사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에코백 등을 지참하여 가능한 한 비닐봉지를 받지 않도록 할 것.

(2) 행사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③ 주최자는 재생 이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설치하여 참가자가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④ 참가자는 행사에서 전항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류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발생 억제 등)

【자료 출처 : 일본 교토시】

## 주요 판례

【대법원】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 ◇ 주요내용

【사 건】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6. 30. 선고 2022허5713 판결

【판결선고】 2026. 8. 12.

## ○ 판시사항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사건 개요

- 이 사건 영어조합법인인 피고는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이 사건 표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표장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판결 요지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4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產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장 오경미 권영준 주심 임상필 박영재

【자료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 유권해석 동향

###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연번 | 질의기관       | 질의내용                                                                                                                                                                         | 회신일       |
|----|------------|------------------------------------------------------------------------------------------------------------------------------------------------------------------------------|-----------|
| 1  | 경 상 북 도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용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용자 채권에 대한 이행 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 '26.6.22. |
| 2  |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교통카드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관련) | '26.8.31. |
| 3  | 경기도시흥시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등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해당 등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에게 조례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제16조 등 관련)                | '26.9.2.  |
| 4  | 경상남도하동군    |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원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내용과 의료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 '26.9.3.  |

**1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용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용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6-0160 / 요청기관: 경상북도 / 회신일자 2026. 6. 22.]

◇ **질의요지**

- 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용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용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에 대한 기금 용자채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에 햇빛 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추어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산업 육성과 농외 소득창출 도모,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경상북도조례”라 한다)를 제정하고,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햇빛소득마을사업(각주: 마을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그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의 85%는 정책 금융지원을 받고 15%는 자부담으로 추진함)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자부담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 직접 용자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통하여 지원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경상북도가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에 대하여 직접 용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대상 또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햇빛소득마을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발전수익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이 경상북도조례의 입법목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개발·보급 및 농외 소득창출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용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지역의 여건 및 기금 운용상황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용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해당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참조)

「지방재정법」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6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7조제4항에서는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존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서는 채권의 이행기간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제1호),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을 연장함이 징수 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제2호),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제3호) 등에 한하여 그 이행을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이 가능한 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적용범위를 추가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용자를 받은 햇빛소득마을사업 마을협동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개정안 제18조의2에서는 천재지변·재해로 인해 발전시설이 훼손된 경우(제1호), 용자 실행 후 전력계통 제한, 장기간 출력제어, 전력거래 조건 변동 등 외부요인으로 발전수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제2호), 조합 해산, 사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를 상환이 곤란한 사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력계통 제한, 장기간 출력제어, 전력거래 조건 변동, 마을협동조합 해산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를 이행연기의 특약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이행연기의 특약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 밖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 법령체계를 고려할 때, 이행연기의 특약 사유를 조례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본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다. 질의 내에 대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에 대한 기금 융자채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제2호)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 장기간의 이행연기 및 회수불능 상태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사정이 있어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 개정안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당초의 이행기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채권과 연체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요건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상북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 단서에서는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면제되는 채권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 제3조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탁금융기관이 변제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개정안의 단서조항은 현행 제3조와 같은 변제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으로 개정안 단서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라. 질의 이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햇빛소득마을사업은 경상북도조례의 입법목적인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농외 소득창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대상 또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의 용도에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기금 운용상황, 재정 여건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차보전은 마을협동조합이 금융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경감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령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출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차보전 역시 지원 대상,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이 적정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햇살에너지농사 및 햇빛소득마을 사업비 용자와 이차보전으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3에서 도지사는 마을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법인이 햇빛소득마을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용

자 또는 대출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조례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햇살소득마을사업에 관한 이차보전을 포함하고 마을협동조합에 대하여 이차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보전비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 재정 여건 및 사업 특성, 현행 조례체계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 자치법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햇살에너지농사 사업비 용자
2.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 하는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관련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제3조(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6조(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2.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성화 지원자금
3.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용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용자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는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으로 한다.

③ 도지사에게 접수된 용자신청서를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2조(용자금 한도) 조례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용자금의 용자한도액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매년 태양광 시장의 조사를 통해 용자금 한도액을 정한다.

제13조(용자기간)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용자기간은 1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자금을 신청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는 용자금의 상환은 대출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로 한다.

제14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대출금리는 매년 연리 1.0퍼센트로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제15조(연체이자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용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6조(용자금의 상환방법) 용자금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며, 상환방법은 6개월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7조(용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용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용자금회수) ① 기금 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의 경우 경상북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기타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 ⑤ (생략)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교통카드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관련)

[안건번호 : 의견26-0194 /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회신일자 2026. 8. 31.]

### ◇ 질의요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교통카드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정지원의 차등을 둘 때, 지역주민 채용실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영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의 제한에 따르는 것 외에는 그가 선택한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철원군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20. 5. 25. 의견제시 20-0122 참조)

이 사안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철원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이하 “철원군조례안”이라 한다)를 제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철원군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제1호),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제2호),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제3호),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철원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철원군조례안 제8조와 같이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제1호),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제2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제1호),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군 또는 구에서는 제1항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제2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제3호), 제10조제5호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여객자동차법 등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정지원 관련 사항의 범위를 살펴보다라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재정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에게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인력 채용에 관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재정지원 관련 조례 위임에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정지원의 차등을 둘 때, 지역주민 채용실적을 고려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철원군조례안을 살펴보면 제6조제1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1호),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제2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재정지원의 타당성(제1호), 신청자금의 적정성(제2호),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제3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제6조제2항의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7조에 따라 차등을 둘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 채용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제1호),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제2호),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제3호),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제4호)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조사사항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조사한 후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교부결정 이후에는 실적보고 및 심사를 거쳐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금액 확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는 지역주민 채용실적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기준(제3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제4조),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제5조), 사업계획서 및 비목별 산정기준(제6조)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채용실적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5. 20. 의견제시 16-0103, 2021. 10. 28. 의견제시 21-0271 참조)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손실액 보전, 운수사업자 교육 등의 지원사업과 지역주민 채용실적 간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역주민 채용을 강요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 채용실적을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차등을 둘 때, 지역주민 채용실적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보조금 교부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금액의 기준을 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29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고려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4. 18. 의견제시 24-0032 참조)

또한, 철원군조례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이력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하여 경영, 서비스, 법규위반 등 다양한 사항을 금액결정의 고려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목적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손실액 보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철원군조례안 제7조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데 반해 지역주민 채용실적은 해당 보조금 지원의 목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채용실적에 따라 재정지원을 늘릴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일 것이나,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보조금은 인건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므로 지역주민 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지원의 근거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채용실적을 재정지원의 차등을 둘 때 고려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2조(재정지원 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공영터미널 설치 사업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다.

### ○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안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 8. (생략)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⑨ (생략)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2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 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 3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등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해당 등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에게 조례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6조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6-0213 / 요청기관: 경기도 시흥시 / 회신일자 2026. 9. 2.]

####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 조례로 그 지역주민이 아닌 ‘해당 등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해당 등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에게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이 아닌 ‘해당 등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해당 등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에게 조례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3. 27. 의견제시 22-0342 참조)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읍·면·동에 해당 행정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미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 주민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의2제1

항에서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에게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 주민은 해당 등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1항에서 지방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 규정 외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주민의 범위 자체를 조례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그 지역주민이 아닌 ‘해당 등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해당 등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 자치법규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개 추첨 또는 위원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등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등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등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선출직 의원
3. 다른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4.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해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 4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원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로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내용과 의료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 : 의견26-0252 / 요청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 회신일자 2026. 9. 3.]

### ◇ 질의요지

가.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원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로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내용과 의료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건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정의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에 대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제1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제2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제3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원의 업무를 위탁이나 대행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다르고 그 범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위탁 또는 대행이 가능한 범위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일부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과 대행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하동군조례안”이라 한다)에 규정한다고 해서 두 규정 간 모순·저촉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위탁과 대행에 관해 해당 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나. 질의 내에 대하여

하동군조례안 제25조에서는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보건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이러한 방식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지역보건법령은 조례의 상위법령으로서 조례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히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동군조례안 제25조와 같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이고, 해당 규정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가 우선 적용되고 법령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입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 자치법규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건의료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에게 보건의료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업무대행의 범위) ① 군수는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25조(관계 법령 등) 보건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 3. (생략)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 ② (생 략)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9. 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3. 9. 26.>

**【자료 출처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 월간 입법동향

□ 발행월 : 2026년 10월

□ 발행처 :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법 제 과 장 박 경 순

법제운영팀장 김 정 근

주 무 관 윤 지 수

주 무 관 이 규 종

입 법 조 사 관 황 대 석

입 법 조 사 관 이 상 민

□ 연락처 : 031-8008-7298 (fax. 031-8008-7289)

※ 본 자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http://www.ggc.go.kr))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월간입법동향 페이지에서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